

검 토 보 고 서

의안 번호	제62호
----------	------

2018. 9. 10.

건명	논산시 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(주민생활지원과)		
제안 및 제출자	논 산 시 장	제안연월일	2018. 8. 28.
소관위원회	행정자치위원회	회부연월일	2018. 8. 28.

보 고 내 용

□ 제안이유

- 자원봉사센터의 위탁운영을 권장하는 행정자치부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침에 따라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센터 운영 및 민간에 의한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비영리법인에 민간 위탁하고자 함.

□ 주요내용

- 위탁사무(시설)
 - ▶ 논산시 자원봉사센터
- 위탁기간
 - 현재 : 2016. 1. 1. ~ 2018. 12. 31.(3년간)
 - 향후 : 2019. 1. 1. ~ 2021. 12. 31.(3년간)
- 사업범위 : 봉사단체 네트워크화,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운영 등
- 사업내용 : 상담사업, 수요처 관리사업, 자원봉사자 모집·교육·관리 사업, 지역축제 자원봉사, 지역사회연계사업 등
- 인원 및 시설 현황
 - 인 원 : 7명(센터장 1, 사무국장 1, 팀장 1, 팀원 2, 코디네이터 2)

- 시 설 : 330m² / 센터장실, 사무실, 교육실

○ 위탁근거

-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(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)
- 논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8조(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)

□ 검토의견

- 자원봉사센터의 위탁운영을 권장하는 행정자치부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침에 따라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센터 운영 및 민간에 의한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비영리법인에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됨.

검 토 보 고 서

의안 번호	제63호
----------	------

2018. 9. 10.

건명	논산지역자활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(주민생활지원과)		
제안 및 제출자	논 산 시 장	제안연월일	2018. 8. 28.
소관위원회	행정자치위원회	회부연월일	2018. 8. 28.

보 고 내 용

□ 제안이유

- 지역자활센터가 지정된 시군구는 우선 지역자활센터에 위탁 실시한다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자활근로사업 업무를 논산지역자활센터에 위탁하여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여 저소득 계층의 자활·자립기반을 마련하고자 함.

□ 주요내용

○ 위탁사무

- ▶ 논산지역자활센터

○ 위탁기간

- 현재 : 2016. 01. 01. ~ 2018. 12. 31.(3년간)
- 향후 : 2019. 01. 01. ~ 2021. 12. 31.

○ 사업내용 : 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

- 시장진입형 : 참식당사업단, 참재활용사업단, 치밥치킨사업단
- 사회서비스형 : 참카페사업단, 참김사업단, 참고소미사업단

○ 위탁근거
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 (지역자활센터 등)

□ 검토의견

- 지역자활센터가 지정된 시군구는 우선 지역자활센터에 위탁 실시한다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자활근로사업 업무를 논산지역자활센터에 위탁 하여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여 저소득 계층의 자활·자립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됨.